



2020-2021년도 학생의 책임 및 권리문,

Childfind 선별검사에 대한 정보

및

**연례 필수 공지사항
(FERPA/매체 옵트아웃 고지 포함)**

Shoreline 공립학교

목차

학생 징계	1
아동 양육권.....	27
비차별.....	27
학교생활기록부	28
성희롱.....	29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 금지.....	30
비차별 고지, 고충/민원 절차.....	31
유고결석 및 무단결석	32
윤리 및 정직.....	36
인터넷 사용.....	37
버스에서의 학생 행실	38
제지 및 격리의 사용.....	40
비상대응규약.....	42
총기 금지 구역.....	45
수색권 사용.....	45
Childfind.....	45
귀하의 알 권리	45
FERPA 권리	46
FERPA 옵트아웃 고지(이미지, 디렉터리 정보 및 매체)	47
살충제 사용.....	48
석면 관리 계획	50

학생의 책임 및 권리문

(2020년 8월 개정)

Shoreline 공립학교

18560 1st Ave. N.E., Shoreline, WA 98155

206.393.6111 ~ www.shorelineschools.org

본 핸드북은 학생의 실제적 및 절차적 권리와 책임을 정하는 주 및 연방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발행되었습니다. 본 핸드북의 모든 조항은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부합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핸드북의 내용은 해당 상황을 통제하게 될 이사위원회 정책 및 학군 절차에서 재판 또는 발취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책 및 절차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최신 정책 및 절차는 모든 학교 건물의 대표 사무실 및 학군의 웹 사이트(www.shorelineschool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훈육

{정책 #3300, 모범적인 학생 행실 및 합리적 제재 중 발취}

학생의 행실과 습성은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건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환경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위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각 학생이 학군과 학군 내 여러 학교 및 프로그램에서 정해 놓은 행실 규칙에 충실히 따르고, 규칙 위반의 결과로 취해지는 시정 조치에 순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학생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 타인의 권리, 개성 및 소유를 존중합니다.
- 요구되는 학습 과정을 잘 수행합니다.
- 긍정적 학습 풍토에 필수적인 수준의 질서를 지킵니다.
- 학군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 교사의 권위 및 교직원에게 의해 부과된 합리적 시정 조치에 순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존하고 배움으로 이어지는 교육 프로세스를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학생 행실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절차 3300P 참조). 이러한 규칙에는 징계, 정학, 퇴교가 내려질 수 있는 비행의 유형을 상당히 명확하게 명시하게 됩니다.

주 법률을 준수하고, 학군에 의해 채택된 학생 행실 규칙은 최적의 교실 내 학습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과 관련해 자격을 지닌 인증 교육자의 판단에 최대한 무게가 실리도록 구현될 것입니다.

학생 행실 규칙은 학교 공직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집행됩니다.

- 학교 시간 동안 및 첫 수업 시작 직전 또는 방과 직후 교내에서.
- 학교 그룹에 의해 또는 학교 활동을 위해 사용 중인 시간을 제외한 어느 때든 교내에서.
- 학교 활동, 의식 또는 이벤트일 때 교외에서.
- 학생의 행동이 교육 과정이나 학군 운영에 실질적으로나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되는 경우 교외에서.
- 학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내, 또는 학생이 교직원의 감독에 속해 있는 동안 기타 장소에서.

절차 3300P에 규정된 규칙에 더해, 학교는 장소 특정적 학생 행실 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출입금지 구역 설정, 카페에 음식 금지 등). 이러한 규칙은 학군의 학생 행실 규칙과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학생 행실 규칙

{절차 #3300P, 학생 행실 모범기준 및 합리적 제재 중 발췌}

학생 행실 규칙

이 절차는 학생의 모범적 행실 및 이러한 행실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예: 정학 및 퇴교)의 부과 및 이에 대한 다름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정책 3310 및 절차 3310P를 참조하십시오.

1. 알코올/화학 물질 –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의 소유, 사용, 배포, 섭취 증거 공개, 판매, 판매 요청 또는 판매 촉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 기구 또는 그러한 의도의 어떠한 물품도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 후원 이벤트 참석 도중 이러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면, 곧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 나와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 및 동료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주 법률, 학군 정책 및 학생회장이 정한 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이든 보고하도록 커뮤니티는 권장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2. 기록부의 변경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가정과 학교 간 나눈 어떠한 대화내용도 위조, 변경 또는 파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방화 – 고의적인 방화 또는 방화 기구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4. 폭행/협박/구타 – 폭행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위협을 의미하며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타는 사람에게 가하는 폭행을 의미하며 이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출석 –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은 주 법률 및 학군 정책에 따라 매일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려면 학생은 한 수업일의 최소 50% 또는 3개의 코스에 해당되는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차원의 담당자에 의한 공식적인 양해가 없는 한, 정해진 수업 및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과도한 및/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결석은 이유를 막론하고 학점 손실 및/또는 시정 조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이 출석 중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의 학업을 완수하더라도 해당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6. 무단침입 - 학교에 무단침입하는 것은 절도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7. 부정행위 - 부정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작업을 고의로 자신의 것으로 하여 제출하는 어떤 학생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정행위에는 타인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학교생활기록부이든 이를 위조, 변조 또는 파기를 통한 부정행위의 도움 및 사주 또한 포함됩니다.
8. 폐쇄/개방 캠퍼스 - 유아원~8학년까지의 학생은 공식적 양해가 있기 전에는 도착한 때부터 교내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중고등 학생은 각 급에 정해져 있는 폐쇄/개방 캠퍼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방 캠퍼스 특권을 이용해 학교에 접해있는 지정 제한 구역에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실 또는 빈번한 출입을 하는 학생은 이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방 캠퍼스 특권이 취소된 후 캠퍼스를 떠나는 학생은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학교 직원, 학교 규칙 또는 학군 정책 협조 - 학생은 학군 담당자의 법적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범죄 행위 - 학교 부지, 학교 감독 이벤트 시 학교 밖 부지 또는 범죄 행위가 학교 또는 학군의 유지 및 운영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학교 밖 부지에서 범죄 행위에 관련된 학생은 시정 조치를 받게 됨은 물론,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11. 위반의 누적 -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여러 정책,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개별적인 위반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큰 우려를 종종 불러 일으킵니다. 징계는 이러한 행위의 누적 효과에 기초합니다.
12. 복장 및 용모 - 정책 3224, 학생 복장에 따라 복장 및 용모는 건강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와해를 유발해선 안 됩니다.
13. 와해성 행실 - 실질적으로나 상당히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는 행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4. 약물(불법) - 위 "알코올 및 화학 물질"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15. 폭발물 - 학교 부지에서 또는 학교에서 후원하는 행사 중 폭발물의 소지, 사용 또는 위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6. 갈취, 협박 또는 강압 - 폭력 또는 폭력 위협으로 현금 또는 재산의 갈취, 또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7. 무고/비방 - 학생은 부정행위의 허위 고발 또는 기타 비방적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8. 싸움 - 신체 접촉이 포함된 싸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9. 위조 – 타인의 이름을 허위로 사용 또는 학교 서식의 시간, 날짜, 학년, 주소 또는 기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 도박 – 도박 행위 또는 타인의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이란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특정 결과가 나왔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양해한 상태에서 기회나 미래의 우연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내기를 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댕가로 거는 것을 말합니다.
21. 범죄 조직 소속/표식 – 범죄 조직 활동 또는 범죄 조직 소속의 표식을 보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3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되고, 리더십을 식별할 수 있으며, 주로 범죄를 목적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범죄 조직의 표식에는 수번호, 손글씨 및/또는 그 색상, 배열, 상표, 표식 변경 또는 기타 다른 속성을 통해 범죄 조직에 가입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의류, 보석류, 액세서리, 그래피티 또는 몸치장 방식이 포함됩니다.
22. 괴롭힘/협박/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 – 정책 3308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 금지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HIB)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공모하거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공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IB는 RCW 9A.36.080(인종, 피부색, 언어를 포함한 국적, 성별, 성 발현 또는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적 취향, 신념, 종교, 나이, 참전 용사 또는 병역 여부, 장애 또는 장애인의 훈련된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의 어떠한 특성 또는 기타 특유의 특성에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보이는 의도성 메시지(음란 채팅 등의 전자 전송 포함)나 이미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물리적으로 학생에게 해를 끼치거나 학생의 재산에 피해를 줄 때, 학생의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영향을 미칠 때, 너무 심하고 집요하고 또는 만연해서 공포스럽거나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거나, 학교를 질서있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와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지되는 HIB에는 비방, 루머, 농담, 풍자, 비열한 발언,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기타 서면, 구두 또는 물리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3. 자신의 신분을 밝힘 – 모든 사람은 요청 시 학교 건물 내에서, 학교 부지에서 또는 학교 후원 이벤트에서 해당 학교 당국에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24. 레이저 및 유사 장치 – 미리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레이저 및 유사 장치의 소유 또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5. 쓰레기 투기 – 쓰레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쌓아두거나, 폐기하는 것은 공유 재산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26. 배회 – 학생들은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작 30분 이상 전에 등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식 방과 시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이 모범입니다.

27. 악의적 비행 –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누군가의 재산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8. 자동차 위반 – 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해 등교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등교하고자 하는 학생은 (a) 학교 부지와 주변에서의 안전 운전과 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b) 건물 관리인이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며, (c) 건물 관리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거부하면 학교 부지에 주차하는 특권을 잃을 수 있고/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 일반의약품/규제 약물/처방약 – 일반의약품 및 규제 약물의 오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0. 절도 – 폭력 또는 폭력 위협으로 개인의 소유를 절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1. 성희롱 – 다른 형태의 괴롭힘과 같이 개인의 성별로 인한 괴롭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예시: 특별 대우 또는 귀중품을 대가로 성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본 것이라는 말을 하거나 그런 뜻을 내비치는 행위; 성적 접근에 따르기를 거부했다고 벌을 주거나 성적 접근을 따랐다고 혜택을 주는 행위; 달갑지 않은, 불쾌한 또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 코멘트, 제스처를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의 외모, 성별, 또는 행위에 대해 성적 의미가 내포된 농담이나 말을 하는 행위; 어떤 사람에게 무례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가거나 스토킹을 하는 행위; 음란 채팅; 또는 학교 부지에서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성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 의해 성희롱 또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믿는 학생은 학교 카운셀러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정책 3209, 학생: 성희롱, 정책 5013, 직원: 성희롱 참조.)
32. 학생 표현 위반 – 학생 표현의 자유는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표현은 저속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교육 과정에 상당한 방해로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권장하는 표현은 적법한 교육적 사항에 기초해 더욱 규제될 수 있습니다. (정책 3220, 표현의 자유 참조.)
33. 지각 – 학생은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해 각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34.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위반 – 학군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기기 또는 개별 학생 기기의 미승인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5. 절도 – 절도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6. 담배, 니코틴 제품, 흡연 기구 – 학생에 의한 담배 제품 및 흡연 기구의 소유, 사용, 판매 및 배포가 학교 부지, 스쿨버스 또는 학교 후원 이벤트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에 의한 담배 제품 및 흡연 기구 사

용은 학교에서 500피트 이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제품 및 흡연 기구에는 담배, 시가, 코담배, 파이프 담배, 무연 담배, 니코틴, 전자 흡연/증기 기구 및 증기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 4316, 담배 니코틴 제품 및 흡연 기구의 사용 참조.)

37. 무단출입 - 미인가 장소에 있거나 해당 장소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8. 학교 당국에 불법적 간섭 -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 중인 관리자,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9. 반달리즘 - 학교 기물의 파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학년 또는 졸업은 주 법률에 따라 보류될 수 있습니다.)
40.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행실 -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상스럽거나 음탕한 행위 또는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1. 무기 및 기타 위험 기구 - 학생은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후원 이벤트에서 총, 칼, 곤봉, 금속 너클, 단검, 화학적 흡입제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위험한 도구 등의 무기, 기타 위험 기구 또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어떠한 물품이든 소지, 제시, 취급 또는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든 명확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극 제작 및 전시 목적의 경우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학군교육자료위원회(District Instructional Materials Committee)의 승인을 통해 사례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책 2311, 교육 자료의 선택 및 채택 참조.) 18세가 넘는 학생과 부모 또는 가디언으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은 14~18세 학생은 학교 부지에서 개인용 보호 스프레이 기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프레이 기구를 14세 미만의 누구에게든,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14~18세의 누구에게든 주어진 안 됩니다. 스프레이 기구는 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자기 방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용 보호 스프레이 기구의 소지, 전달 또는 사용한다면 학군 정책 위반입니다.

사전 규정된 시정 조치

다음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특정 유형의 비행의 결과로 부과 될 시정 조치의 성격과 정도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교사와 심리 담당 직원은 정상 참작 및/또는 예외적 상황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상의 정학 또는 퇴교 이후 연이은 중대한 비행 행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표시된 것보다 더욱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주 법률 및 규정 및 절차 3310P에 따라) 최대 퇴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절차 3300P에 담겨 있으며, www.shorelineschool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 징계 부과 절차

{절차 #3310P, 학생 비행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 중 발췌}

참고: 공교육을 관리하는 주 기관인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OSPI, 공교육 교육감실)에서 2018-19년도와 2019-20년도에 대한 Chapter 392-400 WAC의 학생 징계 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학군 정책, 절차 및 핸드북의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핸드북 발행 후 규칙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학군에서는 이메일 및 미국 주소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I. 정의

I. 정의

행동 위반(Behavioral Violation) — 절차 3300P에 명시된 학생 행실에 대한 학군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의 행동.

교실 배제(Classroom Exclusion) — 행동 위반의 경우 수업일 나머지의 전체 또는 일정 시간 동안 학생을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배제. 단, 학생은 학교에 남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학습을 놓치게 되는 조치는 교실 배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학생이 모범 행동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또는 타 교직원이 기타 형태의 징계를 시도하는 경우이고, (2) 학생이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교사 또는 타 교직원의 감독 하에 있는 경우.

징계(Discipline) — 행동 위반에 따라 학군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

교육 과정 와해 — 교실학습 방해, 무질서 야기, 또는 한 학생이나 학생 그룹의 권리 침해.

긴급 퇴교(Emergency Expulsion) — 해당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므로, 즉각적으로 최대 10 연속 수업일까지 학교에서 퇴거.

퇴교(Expulsion) — 행동 위반에 대해 학생의 현 학교 위치로의 출입을 1 시메스터(semester) 이하 동안 거부.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 — 학생이 최대 10 연속 수업일까지 그/그녀의 정기 교육 환경에서 배제되거나 그/그녀의 현 학교 위치에 남아 있는 단기 정학.

장기 정학(Long-Term Suspension) — 연속 10일을 넘거나 1 시메스터의 기간 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배제되는 정학.

기타 형태의 징계(Other Forms of Discipline) — 교실 배제,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 외에 행동 위반에 대해 사용되는 조치. 교통수단 또는 과외 활동에서의 배제를 포함.

학부모 — WAC 392-172A-01125에 따라 아동의 생물학적 친부모 또는 양부모; 수양부모; 학생이 주의 보호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서 주를 제외하고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인정받았거나, 학생의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정받은 가디언; 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타 친척, 또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개인; 주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리부모; 또는 주 법규에 따라 권리가 그/그녀에게 이전된 성인 학생.

학교업무일(School Business Day) - 토요일, 일요일, 연방 및 주의 휴교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학군 교육감 사무실이 업무를 하는 날. 학교 업무일은 교육감 사무실이 달력일에 대해 달린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업일(School Day) — 학생이 수업 목적으로 학교에 참석한 하루 또는 하루 중 일부.

단기 정학(Short-Term Suspension) — 학생이 최대 10 연속 수업일까지 학교에서 배제되는 정학.

정학(Suspension) — 행동 위반에 대해 어떠한 과목 또는 수업, 또는 어떠한 과목 또는 수업의 전체 일정의 출석을 불허. 교실 배제, 퇴교 또는 긴급 퇴교는 포함되지 않음.

학기(Academic Term) — 1 시메스터(semester, 약 90 수업일로 구성).

II. 시정 조치 부과 절차

A.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1. 각 인증 교사, 학교관리자, 스쿨버스 기사 및 이사위원회가 임명한 기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a) 절차 3300P에 정해져 있고 연례 “학생의 책임 및 권리문” 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된 학군 규칙을 위반하는 비행을 행하는 학생에게 기타 형태의 징계를 부과하고, (b) 이 절차에 설명된 교실 배제를 부과.

2. 위원회는 학군 규칙을 위반하는 비행 학생에게 정학 및 퇴교를 부과할 권한을 교육감 및/또는 그/그녀의 피지명자에게 위임했습니다. 각 인증 교사 및 관리자에게 이러한 비행에 대해 정학 및 퇴교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3. 각 교실의 교사는 RCW 28A.600.020에 따라 자신이 담당할 교실이나 교육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을 때 구내 징계 표준을 위반하여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학생이든 수업일의 잔여 수

업 시간 전체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또는 학교장이나 피지명인과 교사가 부여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실 배제" 섹션에 제공된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교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안적 형태의 시정 조치를 우선 시도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된 학생은 교사의 승낙 없이는 애초에 제외된 특정 수업이나 활동의 잔여 시간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수업일의 잔여 시간을 넘겨 배제되면, 학군은 아래 기술된 것처럼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4. 학군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든 포함해 체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은 Chapter 392-400 WA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모든 학생은 정책 3317 및 절차 3317P에 제공된 것처럼 부당한 결박, 결박 기구, 격리, 기타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받지 않습니다.
6. 전술한 내용 이외에도 모든 인증 교직원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 a. 학생이 학생 행실 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
 - b. 학군 정책/절차와 일관되게 규정된 구내 절차에 따라 학교 규칙 위반에 대해 기타 형태의 징계 부과.
 - c.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위해 필요한 질서 수준을 유지.
 - d. 아래의 섹션 IX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방과 후 학생을 남게 함.
 - e. 결박, 격리, 기타 적절한 힘의 사용을 관리하는 학군 정책 3317 및 절차 3317P에 따라 본인,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 학대나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절한 조치를 사용.
7. 인증된 모든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 a. 학생의 권리를 감독.
 - b. 학생 행실 규칙을 공정하고, 일관성있게, 차별없이 집행.
 - c. 교장이나 다른 관리자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중요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 및/또는 후속 중재를 문서화.
 - d. 학교의 교실, 복도, 운동장 또는 기타 공용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스쿨 버스나 기타 형태의 교통편을 이용할 때 질서 유지(현장 학습 포함).
 - e. 정확한 출석 기록을 하고 모든 무단결석을 보고.
 - f. 개인 행실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정하고 어떠한 학생 또는 학생 그룹에게도 비하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표현을 회피.

B. 기타 형태의 징계에 적용되는 조항

위에서 규정된 것처럼 기타 형태의 징계는 행동 위반(즉, 절차 3300P의 행실 규칙 미준수)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학생이 과목, 학년 또는 졸업 요건을 완료치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해지지 않습니다. 학군은 학생에게 기타 징계 조치의 형태로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C. 교실 배제

1. 집행 권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는 동안 교육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 위반을 하는 경우 본 절차의 요건에 따라 학생을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학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또한 타 학교 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절차 3300P에 명시된 학생 행동 실 학군 규칙의 행동 위반을 하는 경우 본 절차의 요건에 따라 학생을 교실이나 교육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배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형태의 징계: 교실 배제를 사용하기 전, 교사 또는 타 학교 관계자는 먼저 학생이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타 형태의 징계를 시도해야 합니다. 단, 해당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교실 배제의 한계:

a. 기간: 교실 배제는 학생이 학생의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배제된 수업일의 잔여 시간 전체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수업일의 잔여 시간을 넘겨 배제되면, 학군은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에 대해 고지 및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게 됩니다.

b. 학교: 학군이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에 대해 고지 및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학생은 교실 배제 동안 학교에서 퇴거당하지 않습니다.

c. 과제 및 시험: 학군은 학생이 교실 배제 시 놓친 과제와 시험을 보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고지: 교실 배제에 이어 학군은 다음 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a. 교장에게: 교사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는 교실 배제로 이어진 행동 위반을 포함한 교실 배제를 가급적 빨리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b. 학부모에게: 교사,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가급적 빨리 학생의 교실 배제와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군은 이 공지가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비상 상황: 교사 또는 교직원이 해당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근거 하에 교실 배제를 집행하는 경우, (a) 교사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는 즉시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b)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가급적 빨리 학생을 만나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D. 모든 정학 및 퇴교에 적용되는 조항

1. 일반적 요건

- a. 학생은 행동 위반에 대해 정학 또는 퇴교를 당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 b. 학부모 관여: 학군은 학생이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에서 학부모의 이른 관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가 행동 위반의 해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 시도를 하게 됩니다.
- c. 심의: 어떠한 정학 또는 퇴교든 이를 부과하기 전, 학군은 학생의 개인적 상황 및 행위 위반의 본질 및 상황을 심의하여 정학 또는 퇴교 및 퇴교 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d. 학군 구내로의 접근: 정학 및 퇴교에는 학군이 소유, 임대, 대여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입장 또는 출입 거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정학 또는 퇴교 기간 동안 특정 교실이나 학습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e. 교육 서비스: 학군은 학생의 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유예하거나 과목, 학년 또는 졸업 요건을 완수치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는 정학 또는 퇴교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 f. 보고: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모든 정학 및 퇴교, 그리고 각 정학 또는 퇴교의 원인이 된 행위 위반을 학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정학 또는 퇴교 부과 후 24시간 내에 보고하게 됩니다.
- g. 재출입: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 후, 학군은 가능한 빨리 학생의 정규 교육 환경으로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학군은 또한 아래 섹션 IV에 명시된 것처럼 학생이 언제든지 복학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h. 교육 환경: 만약 학군이 정학 또는 퇴교 동안 학생을 다른 프로그램 또는 학습 과정에 등록하면, 학군은 정학 또는 퇴교 종료일 이후 그/그녀의 정규 교육 환경 복귀를 배제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 아래에 기재된 것처럼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학생의 퇴교 연장 청원을 수락하는 경우, (ii) 학생이 아래의 섹션 X에 의해 그/그녀의 정규 교육 환경에서 배제된 경우, 또는 (iii) 주 법률에서 학생이 그/그녀의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2. 학생과의 1차 심리

- a. 어떠한 정학 또는 퇴교든 부과하기 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의 관점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과 함께 약식 1차 심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 b. 1차 심리의 범위: 1차 심리에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하게 됩니다. (i) 절차 3300P의 학생 행실 규칙의 위반 고지, (ii) 행동 위반 관련 증거 설명, (iii)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설명 및 (iv) 학생이 행동 위반과 관련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

c. 학부모 참여:

i.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의 부과를 심의할 때, 학생은 1차 심리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ii.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장기 정학 또는 퇴교의 부과를 심의할 때, 학생의 부모가 1차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부모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d. 결정: 1차 심리 이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어떠한 정학 또는 퇴교에 대해서든 그 시작 및 종료일을 포함한 행동 위반(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 징계의 결정을 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e. 언어 지원: 학군은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1차 심리 및 서면 고지가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3.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고지

a. 사전 징계 고지: 어떠한 정학 또는 퇴교든 부과하기 전, 학군은 행동 위반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b. 사후 징계 고지: 학생과 1차 심리 후 1 학교업무일 내에 학군은 정학 또는 퇴교에 대한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서면 고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i. 학생의 행실 및 이러한 행실이 어떻게 절차 3300P의 학생 행실 규칙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설명.

ii. 정학 또는 퇴교의 기간 및 조건(정학 또는 퇴교의 시작 및 종료일 포함).

iii. 학군이 심의 또는 시도했던 기타 형태의 징계 및 정학 또는 퇴교를 부과한 결정에 대한 설명.

iv. 정학 또는 퇴교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v.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약식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vi. 정학 또는 퇴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이의 제기를 요청할 곳 포함).

vii. 장기 정학 또는 퇴교의 경우에 한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학업복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c. 언어 지원: 학군은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1차 심리 및 서면 고지가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4. 교장과의 컨퍼런스(선택사항)

a. 컨퍼런스 요청: 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군의 정학 또는 퇴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약식 컨퍼런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 컨퍼런스의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b. 시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달리 동의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후 3 학교업무일 내에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c. 컨퍼런스: 약식 컨퍼런스 동안,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및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i) 행동 위반과 관련해 학생의 관점 및 해명을 공유, (ii) 교장 또는 피지명인 및 정학 또는 퇴교로 이어진 사건에 관계된 교직원과 상의 및 (iii) 부과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징계를 논의.

d. 언어 지원: 학군은 컨퍼런스가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열릴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e.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약식 컨퍼런스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정학 또는 퇴교에 이의를 제기, 학업복귀 미팅에 참석, 또는 재출입을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 단기 정학(교내 정학 포함)에만 적용되는 조항

1. 기타 형태의 징계: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을 부과하기 전, 학군은 학생이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선 기타 형태의 징계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시도하게 됩니다.

2. 배제 기간: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은 연속 10 수업일 이내가 됩니다. 학군은 행동 위반이 발생한 학년도를 넘겨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학년 한계: 학군은 다음 한도를 초과해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 유아원~4학년까지 학생의 경우, 어떠한 학기 동안에서든 누적 10 수업일.

b. 5~12학년까지 학생의 경우, 어떠한 한 시메스터(semester) 동안에서든 누적 15 수업일 또는 어떠한 한 트리메스터(trimester) 동안에서든 누적 10 수업일.

4. 교내 정학: 학교가 교내 정학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시, 교장은 타 학군의 정책 및 절차와 일관적인 교내 정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교내 정학을 부과할 시 학군은 교직원으로 하여금,

a. 교내 정학 기간 중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위해 학생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도록 하고,

b. 해당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으로부터의 과제 및 학습과정에 학생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F. 장기 정학에만 적용되는 조항

1. 기타 형태의 징계: 장기 정학을 부과하기 전, 학군은 학생이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타 형태의 징계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심의하게 됩니다.

2. 장기 정학을 정당화하는 행동: 학군은 다음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 정학을 부과하게 됩니다.

a. 장기 정학은 “비재량적 징계”로, RCW 28A.600.015(6)(a)-(d)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는 행동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징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은 아래 요약되어 있습니다.

i. RCW 28A.600.420에서 금하고 있는 바, 학생이 공립학교부지, 공립학교 제공의 교통수단 또는 공립학교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의 지역에 총기를 반입, 이러한 곳에서 총기를 소지 및/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며 총기로 보여지는 기구를 제시.

ii. 학생의 행실이 폭력범죄, 성범죄, 유독가스 흡입, 규제약물 위반, 주류 위반 또는 RCW 13.04.155에 열거된 기타 특정 범죄.

iii. 3년 기간 내에 학생이 RCW 9A.46.120(범죄 조직 협박), RCW 9A.41.280(학교 시설에서 위험한 무기류 소지), RCW 28A.600.455(범죄 조직 활동), RCW 28A.635.020(학교 관리자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공공 부지에서 퇴거 거부) 또는 RCW 28A.635.060(학교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을 2회 이상 위반.

iv. 타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

b. 만약 학생이 장기 정학 완수 전 학교로 복귀하면, 그 학생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임박한 위험이 되거나, 교육 과정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이 되는 것으로 학군은 정했습니다.

3. 배제 기간: 장기 정학은 한(1) 학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학군은 행동 위반이 발생한 학년도를 넘겨 단기 또는 교내 정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학년 한계: 학군은 유아원~4학년까지의 어떠한 학생에게든 장기 정학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섹션 VIII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그 학생이 총기 위반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5. 학업복귀: 학생이 장기 정학을 받은 경우 학군은 아래의 섹션 VII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에 학업복귀 미팅을 갖고 학업복귀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G. 퇴교에만 적용되는 조항

1. 기타 형태의 징계: 퇴교를 부과하기 전, 학군은 학생이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타 형태의 징계를 심의하게 됩니다.

2. 퇴교를 정당화하는 행동: 학군은 다음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퇴교를 부과하게 됩니다.

a. 퇴교는 “비재량적 징계”로, RCW 28A.600.015(6)(a)-(d)의 사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는 행동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징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은 아래 요약되어 있습니다.

i. RCW 28A.600.420에서 금하고 있는 바, 학생이 공립학교부지, 공립학교 제공의 교통수단 또는 공립학교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의 지역에 총기를 반입, 이러한 곳에서 총기를 소지 및/또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며 총기로 보여지는 기구를 제시.

ii. 학생의 행실이 폭력범죄, 성범죄, 유독가스 흡입, 규제약물 위반, 주류 위반 또는 RCW 13.04.155에 열거된 기타 특정 범죄.

iii. 3년 기간 내에 학생이 RCW 9A.46.120(범죄 조직 협박), RCW 9.41.280(학교 시설에서 위험한 무기류 소지), RCW 28A.600.455(범죄 조직 활동), RCW 28A.635.020(학교 관리자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공공 부지에서 퇴거 거부) 또는 RCW 28A.635.060(학교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을 2회 이상 위반.

iv. 타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이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

b. 만약 학생이 퇴교 완수 전 학교로 복귀하면, 그 학생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임박한 위험이 되는 것으로 학군은 정했습니다.

3. 배제 기간: 퇴교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학군 교육감에게 퇴교 연장을 청원하여 그 청원이 수락되지 않는 한, 한(1) 학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학년 한계: 학군은 유아원~4학년까지의 어떠한 학생에게든 퇴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섹션 VIII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그 학생이 총기 위반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5. 학업복귀: 학생이 퇴교를 받은 경우 학군은 아래의 섹션 VII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에 학업복귀 미팅을 갖고 학업복귀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6. 연장에 대한 청원: 학교장이나 피지명인은 대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그러한 연장이 정당화되는 경우, 한(1) 학기를 초과하는 기간으로 퇴교를 연장하도록 교육감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a. 시한: 청원서는 아래의 섹션 VII에 따라 학업복귀 계획을 마련한 후 및 퇴교 종료 전에만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섹션 VIII에 기술된 것처럼 학생이 총기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언제든지 퇴교 연장 청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 내용: 청원서에는 WAC 392-400-480에 나열된 요소가 포함됩니다.

c. 고지: 학군은 감독관 또는 피지명인이 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1 학교업무일 내에 청원에 대한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고지에는 청원 사본,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과 함께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고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5 학교업무일 내에 열리게 되는 약식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학군이 서면 고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5 학교업무일 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원에 응답할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d. 연장 수락을 위한 근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이 학기 기간 후 그/그녀의 이전 학교 위치로 복귀하게 된다면 공중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청원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e. 연장 기간: 퇴교의 연장은 학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f. 서면 결정: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청원을 받은 후 10 학교업무일 내에 교장,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결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청원이 수락되면 서면 결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연장된 퇴교의 종료일, (ii) 학생이 첫 퇴교 종료일 전에 복귀한다면 공중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이유 및 (iii) 아래에 기재된 연장 결정의

검토 및 재고를 요청(요청할 곳 포함)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권리. 청원이 수락되지 않으면 서면 결정은 퇴교 종료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g. 검토 및 재고:

i. 검토 요청: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사위원회가 학생의 퇴교 연장 결정을 검토 및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ii. 시한: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결정을 제공한 날로부터 10 학교업무일 내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iii. 검토 절차: 이사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주장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교장과 만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행동 위반, 학생의 퇴교 결정 또는 학교의 대리인 심리 담당자에 의한 학생의 퇴교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결정과 관련없는 위원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iv. 결정: 이사위원회는 검토 및 재고 요청을 받은 후 10 학교업무일 내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결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면 결정에선 위원회가 학생의 퇴교 연장 결정을 인정, 반대 또는 변경할지 여부 및 연장된 퇴교의 종료일을 명시하게 됩니다.

h. 언어 지원: 학교는 어떠한 청원 절차, 고지 및 결정이든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i. 연례 보고: 학교는 승인 및 거부된 청원의 수를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공교육 교육감실)에 매년 보고하게 됩니다.

H. 긴급 퇴교에만 적용되는 조항

1. 충분한 근거: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고 믿어지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학생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 의해 비상 상황에서 즉시 퇴교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의 의미:

a. 학생의 행동이 수업일 내내 타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만들어 극심한 교육 과정 와해를 초래하고,

b. 행동 모범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려는 교직원의 합리적인 기타 형태의 징계 부과 시도가 고갈됨.

2. 시한: 긴급 퇴교는 10 수업일 내에 종료되거나 타 형태의 징계로 전환됩니다.

3. 전환: 만약 학교가 긴급 퇴교를 정학 또는 퇴교로 전환하면, 학교가 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전환 전 학생이 긴급 퇴교된 일수를 총 정학 또는 퇴교 기간에 적용하고, (b) 부과된 정학 또는 퇴교 유형에 대해 이 절차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 및 정당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4. 보고: 모든 긴급 퇴교는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포함해) 학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긴급 퇴교 시작 후 24시간 내에 보고됩니다.

5. 1차 고지: 긴급 퇴교 후, 학군은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이 된다고 학군이 믿는 이유를 학생의 학부모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6. 뒤 이은 서면 고지: 긴급 퇴교 후 24시간 내에, 학군은 긴급 퇴교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서면 고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a. 해당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이 되는 이유.

b. 긴급 퇴교의 기간 및 조건(긴급 퇴교의 시작 및 종료일 포함).

c. 긴급 퇴교 동안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d.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약식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e. 긴급 퇴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이의 제기를 요청할 곳 포함).

7. 언어 지원: 학군은 1차 및 뒤 이은 서면 고지가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8. 교장과의 컨퍼런스(선택사항):

a. 컨퍼런스 요청: 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군의 긴급 퇴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약식 컨퍼런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 컨퍼런스의 요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b. 시한: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달리 동의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후 3 학교업무일 내에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c. 컨퍼런스: 약식 컨퍼런스 동안,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긴급 퇴교를 초래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관점 및 해명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 및 부모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d. 언어 지원: 학군은 컨퍼런스가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열릴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e.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약식 컨퍼런스는 긴급 퇴교에 이의를 제기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I. 무단결석 및 지각, 학교급식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조항

1. 학군은 결석 또는 지각에 대해 학생을 정학 또는 퇴교하지 않습니다.

2. 학군은 학생에게 영양상 충분한 급식의 거부 또는 지연을 초래할 방식으로 징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II. 징계를 다루는 절차

A. 교실 배제 및 기타 형태의 징계에 대한 민원 절차

본 절차에 따른 교실 배제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교통수단 또는 과외 활동 으로부터의 배제 포함)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민원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약속 미팅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 절차는 정확, 퇴교 또는 긴급 퇴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선 아래 기재된 것처럼 별도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슈가 되는 교실 배제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 부과 2 학교업무일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은 교장실에서 직접 이뤄지거나 학교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이뤄집니다. 민원의 대상이 된 조치를 내린 직원에겐 그러한 민원의 제기에 대해 통지가 되고 미팅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팅 시, 학생 및 학부모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행동 위반과 관련해 학생의 관점 및 해명을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그/그녀의 결정에 대한 서면 고지를 미팅 후 5 학교업무일 내에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행하게 됩니다. 교실 배제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조치의 연기를 결정하지 않는 한, 민원 절차 동안 계속됩니다.

B. 단기 및 교내 정학의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의 제출: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단기 정학(교내 정학 포함)에 대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학교가 단기 정학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5 학교업무일 내에 교육감실에 구두로(대면해서 또는 전화로) 또는 서면으로(직접 전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행동 위반과 관련해 학생의 관점 및 해명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 및 부모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2. 결정: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의 제기를 받은 후 2 학교업무일 내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이의 제기 결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a. 정학의 인정, 반대 또는 변경 결정.

정학의 기간 및 조건(정학 또는 퇴교의 시작 및 종료일 포함).

c. 정학 중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 서비스.

d.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해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고지(요청할 곳 포함).

C. 장기 정학, 퇴교 및 긴급 퇴교의 이의 제기

1. 이의 제기 요청: 학생 또는 학부모는 장기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에 대해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 요청은 교육감실에 구두로(대면해서 또는 전화로) 또는 서면으로(직접 전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시한: 이의 제기 요청은 다음 기간 내에 학교에 수신되어야 합니다.

a. 장기 정학 및 퇴교의 경우, 학군이 장기 정학 또는 퇴교의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5 학교업무일 내.

긴급 퇴교의 경우, 학군이 긴급 퇴교의 서면 고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 학교업무일 내.

3. 심리의 고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달리 동의를 받지 않은 한, 이의 제기 요청을 수신한 후 1 학교업무일 내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고지를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a. 이의 제기 심리의 시간, 일시 및 장소.

b. 이의 제기를 주재하는 공무원의 성명.

c. 아래의 섹션 7.b에 명시된 학생의 교육기록부를 점검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d. 어떠한 문서상 또는 실체적 증거 및 심리에서 소개될 어떠한 증인의 목록이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e. 아래의 섹션 8에 명시된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f. 장기 정학 및 퇴교의 경우에만(긴급 퇴교는 예외), 학군이 이의 제기 심리 전 학업복귀 미팅 개최를 제공할지 여부.

4. 학업복귀 기회: 장기 정학 및 퇴교(긴급 퇴교는 제외)의 경우에 한해, 이의 제기 심리 전 학생, 학부모 및 학군은 학업복귀 미팅을 갖고 학업복귀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학군은 학업복귀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이의 제기 심리를 연기하기로 상호 간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심리: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달리 동의를 받지 않은 한, 다음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심리를 주재하게 됩니다.

a. 장기 정학 및 퇴교의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 학교업무일 내.

b. 긴급 퇴교의 경우,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이의 제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학교업무일 내.

6. 주재 공무원: 심리 담당자(학군 직원 또는 계약자)는 이의 제기를 심리 및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담당자는 학생의 행동 위반 또는 장기 정학, 퇴교 또는 긴급 퇴교 결정과 무관하여야 하며 주 징계 규칙 및 학군의 징계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7. 증거 및 증인:

a. 요청에 따라 학생, 학부모 및 학군은 어떠한 문서상 또는 실체적인 증거 및 이의 제기 심리에서 소개될 어떠한 증인의 목록이든 이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군,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하며, 늦어도 이의 제기 심리 전 학교업무일의 종료시간 이전 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b. 요청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기록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부를 제공토록 해야 하며, 늦어도 이의 제기 심리 전 학교업무일의 종료시간 이전이어야 합니다.

c. 만약 학군의 증인이 이의 제기 심리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지 않으면, 심리 담당자는 증인의 불참에 대해 다음을 조건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i) 학군이 증인을 보이려는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고, (ii) 증인의 불참이 보복에 대한 공포 또는 기타 설득력있는 이유에 기인함.

8. 학생 및 학부모 권리: 이의 제기 심리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a. 변호사에 의한 대변.

b. 증인에게 질문.

c. 행동 위반에 대한 학생의 관점 공유 및 해명 제공.

d. 관련된 문서상, 실체적 또는 진술적 증거 제시.

9. 심리 기록: 이의 제기 심리는 수기, 전자 또는 기타 유형의 기록 장치로 기록됩니다. 학군은 요청에 따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기록을 제공하게 됩니다.

10. 이의 제기 결정: 심리 담당자는 심리에 제시된 증거만을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담당자는 서면 결정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다음 시한 내에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 정학 및 퇴교의 경우 이의 제기 심리 후 3 학교업무일 내 및 긴급 퇴교의 경우 이의 제기 심리 후 1 학교업무일 내, 서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a. 사실의 발견.

b. 장기 정학 및 퇴교(긴급 퇴교는 예외)의 경우에서만,

i. 학생의 행실이 절차 3300P에 명시된 학생 행실 규칙을 위반했는지, 행동 위반이 합리적으로 정학 또는 퇴교 및 정학 또는 퇴교의 기간을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정학 또는 퇴교가 인정, 반대 또는 변경되는지 여부의 결정.

ii. 정학 또는 퇴교의 기간 및 조건(정학 또는 퇴교의 시작 및 종료일 포함).

iii. 학업복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고지 및 학업복귀 미팅의 일정을 조율할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c. 긴급 퇴교의 경우에서만,

i. 해당 학생의 존재가 계속해서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지 여부의 결정.

ii. 학군이 긴급 퇴교를 종료하거나 이를 정학 또는 퇴교로 전환할지 여부.

만약 학군이 긴급 퇴교를 정학 또는 퇴교로 전환한다면, 학군은 부과된 정학 또는 퇴교 유형에 대해 이 절차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 및 적당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d. 이의 제기 결정에 대해 검토 및 재고를 요청할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고지(요청할 곳 포함).

11. 언어 지원: 학군은 고지, 이의 제기 절차 및 결정이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D. 이의 제기 계류 중

1. 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장기 정학 또는 퇴교에 대해 이의 제기를 요청

하면, 학군은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임시로 정학 또는 퇴교를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에 따릅니다.

a. 학군은 1차 심리로부터 연속 10 수업일 이내 또는 이의 제기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중 빠른 기간 동안 임시로 정학 또는 퇴교를 계속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에 따릅니다.

b. 이의 제기가 결정되기 전 학생이 임시로 정학 또는 퇴교된 일수는 해당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 기간에 적용되고 해당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c. 만약 임시로 정학 또는 퇴교된 학생이 본 섹션에 따라 이의 제기가 결정되기 전 학교로 복귀하면, 학군은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교 동안 놓친 과제 및 시험을 보충할 기회를 학생의 복귀 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E. 검토 및 재고

1. 정학 및 비상 외 퇴교의 검토 및 재고

a. 검토 요청: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사위원회가 심리 담당자의 결정을 검토 및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검토를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시한: 이의 제기는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이의 제기 결정을 제공한 날로부터 10 학교업무일 내에 교육감실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c. 검토 절차:

i. 심리 담당자의 결정을 검토하며, 위원회는 행동 위반에 관련된 모든 문서상 및 물리적 증거, 이의 제기로부터의 기록 및 학군의 징계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ii.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주장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 교장, 증인 또는 교직원과 만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i. 위원회의 결정은 행동 위반,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 결정 또는 심리 담당자의 결정과 관련없는 위원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d. 결정: 위원회는 검토 및 재고 요청을 받은 후 10 학교업무일 내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결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됩니다.

i. 학교위원회가 정학 또는 퇴교를 인정, 반대 또는 변경할지 여부.

ii. 정학 또는 퇴교의 기간 및 조건(정학 또는 퇴교의 시작 및 종료일 포함).

iii. 장기 정학 또는 퇴교의 경우에 한해, 학업복귀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고지.

e. 언어 지원: 학군은 어떠한 검토 절차 및 결정이든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2. 긴급 퇴교의 검토 및 재고

a. 검토 요청: 학생 또는 학부모는 이사위원회가 심리 담당자의 이의 제기 결정을 검토 및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검토를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시한: 이의 제기는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 이의 제기 결정을 제

공한 날로부터 5 학교업무일 내에 교육감실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c. 검토 절차:

i. 심리 담당자의 결정을 검토하며, 위원회는 행동 위반에 관련된 모든 문서상 및 물리적 증거, 이의 제기로부터의 기록 및 학군의 징계 정책을 심의하게 됩니다.

ii.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주장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 교장, 증인 또는 교직원과 만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i. 위원회의 결정은 행동 위반,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 결정 또는 심리 담당자의 결정과 관련없는 위원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d. 결정: 위원회는 검토 및 재고 요청을 받은 후 5 학교업무일 내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결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됩니다.

i. 해당 학생의 존재가 타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거나 교육 과정의 물리적이고 상당한 와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학군의 결정을 인정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

ii. 만약 긴급 퇴교가 아직 종료 또는 전환되지 않았다면, 학군이 긴급 퇴교를 종료하거나 정학 또는 퇴교로 전환할지 여부. 만약 학군이 긴급 퇴교를 정학 또는 퇴교로 전환한다면, 학군은 부과된 정학 또는 퇴교 유형에 대해 이 절차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 및 정당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e. 언어 지원: 학군은 어떠한 검토 절차 및 결정이든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IV. 정학 또는 퇴교 중 복학

정학 또는 퇴교를 받았던 어떤 학생이든 언제든지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학생이 출석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 학생이 복귀하고 싶은 이유 및 이 요청을 심의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 에세이.

B. 이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

C. 학생을 지원해 왔던 학부모 또는 타인의 사유 보고서.

D. 학생이 그/그녀의 학습 진도에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는 증거.

E. 자원봉사 및 개선을 위한 기타 노력에 대한 기록.

F. 퇴교가 약물 또는 알코올이 관련돼 있다면, 약물 및 알코올 평가 사본 및 해당 평가의 권장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따랐다는 증거.

교장은 신청서를 심의하고,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과 상담하며, 그/그녀의 결정을 신청서 수신 5 학교업무일 내에 서면으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복학은 교장에 의해 제안되는 합리적 조건에 따르며, 아래의 행동 협약에 제한을 받습니다.

복학 과정은 주 법률 Chapter 28A.600 RCW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학군에

의해 수행되는 학업복귀 미팅과는 구별되며 별도입니다. (아래의 섹션 VII 참조.)

V. 행동 협약

학군은 행동 위반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와 행동 협약(정확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협약 포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치료 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하며, 정확 또는 퇴교를 대신하거나 이를 일시 중지시키게 됩니다. 학군은 행동 협약으로 인해 학생이 학업복귀 미팅에 참석할 기회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행동 협약 기간은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학군이 학생 및 학부모와 행동 협약을 체결한 후 발생하는 행동 위반에 대해 학군의 징계 부과를 막지 못합니다.

학군은 본 섹션에 따른 어떠한 행동 협약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VI. 교육 서비스

A. 학생의 정확, 퇴교 또는 긴급 퇴교 동안, 학군은 그/그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 서비스는 학생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학군이 정한 교육 표준을 충족하며, 과목, 학년 및 졸업 요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때, 학군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1. 학생, 학부모, 학생의 교사들로부터의 유의미한 의견.
2. 학생의 정규 교육 서비스가 영어 증진 서비스, 특수 교육, 재활법(1973년) 섹션 504에 따른 숙박 시설 및 관련 서비스 또는 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보충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3. 학생이 교육 서비스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 기술, 교통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접근성.

C. 학군은 대안적 환경에서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확 또는 퇴교를 사례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환경은 학생이 배제적 징계가 아니었다면 받았을 정규 교육 서비스에 상당하고, 이와 동등하며, 적합해야 합니다. 대안적 환경의 예시로는 대안 고등학교, 일대일 지도, 온라인 학습 등이 있습니다.

D. 정확 또는 퇴교가 부과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히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군이 제공할 교육 서비스에 관한 서면 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군은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서면 고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지에는 제공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학생이 과제 및 학습과정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교직원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E. 최대 연속 5 수업일까지의 정확 또는 긴급 퇴교 대상인 학생의 경우, 학군은 최소한 다음을 제공하게 됩니다.

1. 학생의 정규 과목 또는 수업으로부터의 학습 과정(할당된 숙제 포함).

2.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으로부터의 과제 및 학습과정에 학생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직원의 연락처.

3. 학생이 정학 또는 긴급 퇴교 기간 동안 놓친 과제 또는 시험을 보충할 기회.

F. 최대 연속 6~10 수업일까지의 정학 또는 긴급 퇴교 대상인 학생의 경우, 학군은 최소한 다음을 제공하게 됩니다.

1. 학생의 정규 과목 또는 수업으로부터의 학습 과정(할당된 숙제 포함).

2.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으로부터의 과제 및 학습과정에 학생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직원의 연락처. 교직원은 정학 또는 긴급 퇴교 시작 후 3 학교업무일 이내 및 그 이후 정학 또는 긴급 퇴교가 종료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하게 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학생의 모든 정규 과목 또는 수업의 과제 및 학습과정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빈도로 학생과 교사 간 학습과정의 전달 및 평가를 조율.

b. 학생의 학업 진척도 관련 학생,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와 소통.

3. 학생이 정학 또는 긴급 퇴교 기간 동안 놓친 과제 또는 시험을 보충할 기회.

G. 연속 10 수업일을 초과하는 퇴교 또는 정학 대상인 학생의 경우, 학군은 WAC 392-121-107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H. 학군은 위와 같이 요구되는 고지 및 소통이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VII. 학업복귀:

A. 학업복귀 미팅: 학군이 학생에게 장기 정학 또는 퇴교를 부과하면, 학생의 학업복귀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와의 학업복귀 미팅을 소집하게 되며, 다음 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1. 학군은 미팅의 시간 및 장소 일정을 잡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게 됩니다.

2. 미팅은 (i)장기 정학 또는 퇴교 시작 20 달력일 이내이지만 늦어도 학생의 학교 복귀 5 달력일 전, 또는 (ii)만약 학생 또는 학부모가 즉각적인 학업복귀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3. 학업복귀 미팅은 이의 제기 심리 또는 복학 청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B. 학업복귀 계획: 학군은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춰 문화적으로 세심하고 문화적으로 감응적인 학업복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와 협력하게 됩니다. 학업복귀 계획 마련 시, 학군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1. 학생의 정학 또는 퇴교를 초래한 사건의 본질 및 상황.

2. 학생의 문화적 내력 및 맥락, 가족의 문화적 규범 및 가치, 커뮤니티 리소스 및 커뮤니티 및 학부모 아웃리치.

3. 학생이 정학 또는 퇴교되는 기간의 단축.

4.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고 학생이 졸업까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

및 비학습적 지원 제공.

5. 정학 또는 퇴교를 초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또는 교직원 지원.

C. 문서화: 학군은 학업복귀 계획을 문서화하고 이 계획의 사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D. 언어 지원: 학군은 학업복귀 미팅 및 계획이 학생 및 학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영어 활용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및 학부모의 경우 언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VIII. 총기 위반

A. 주 법률(RCW 28A.600.420)에 따라, 학생이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총기 위반을 저지르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만약 학생이 학교부지, 학교 제공의 교통수단 또는 공립학교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의 지역에 총기를 반입 또는 이러한 곳에서 총기를 소지한 것이 밝혀졌다면, 학군은 최소 1년간 그 학생을 퇴교시키게 됩니다. 학군 교육감은 사례별로 퇴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학생이 RCW 9A.04.110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부지, 학교 제공의 교통수단 또는 공립학교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의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며 총기로 보여지는 기구를 제시한다면, 학군은 최대 1년까지 그 학생을 정학 또는 퇴교시킬 수 있습니다.

B. 다음은 총기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1. 학군에서 승인한, 총기가 사용되는 군사 교육에 관여 중인 모든 학생.

2. 학군에서 승인한, 수집가 또는 강사의 총기가 취급 또는 전시되는 컨벤션, 전시, 시범, 강의 또는 총기 안전 코스에 관련된 중인 학생

3. 학군에서 승인한, 사격대회에 참석 중인 모든 학생.

IX. 유치

학교 규칙, 규정의 사소한 위반의 경우 또는 사소한 비행의 경우, 교직원은 (위에서 정의한 "기타 형태의 징계"로서)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과 후에 학생을 최대 2시간 동안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학부모에게 통지가 된 후에야 시작됩니다(성인 학생의 경우는 예외). 통지의 목적은 학부모에게 유치에 대한 이유를 알리고, 학생이 시정 조치로 방과 후 남겨졌다가 하교할 때 필요한 교통수단을 학부모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 전, 교직원은 학생에게 문제가 된 범죄의 본질에 대해서와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행실에 대해 알리게 됩니다.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교직원에게 해명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시정 조치로 유치된 학생은 교직원 또는 기타 전문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이 이러한 시정 조치에 소비한 시간은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X. 피해자 보호

RCW 28A.600.460에 따라, 학군은 정학 또는 퇴교의 종료일 후 특정 범행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이 정규 교육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

A. RCW 28A.600.460(2)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그 행위가 교사를 상대로 한 경우, 그 학생이 해당 학교에 출석하는 시기에 해당 교사의 교실에 배정되지 않게 되거나 해당 교사가 배정된 기타 어느 학교에든 배정되지 않게 됩니다.

B. RCW 28A.600.460(3)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그 행위가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 그 학생이 해당 학교에 출석하는 시기에 피해자의 교실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가 등록된 기타 어느 학교에서든 배제됩니다.

XI. 기본권

본 장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학군은 다음 사항을 하지 않습니다.

A. 성별, 인종, 신조, 종교, 피부색, 국적, 나이, 참전 용사 또는 군인 신분, 성적 성향, 성 표현 또는 정체성, 장애, 훈련받은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의 사용을 기초로 학생을 불법적으로 차별.

B.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합리적 제한을 받으나 언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생의 헌법적 권리, 평화적인 집회 및 불만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부 대표에게 청원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파간 통제 또는 영향이 없는 학교를 가질 헌법적 권리를 학생에게서 빼앗음.

C.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학생의 사람, 서류 및 물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학생에게서 빼앗음.

D. 학생이 학군에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

E.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학생의 권리를 전체 또는 일부 빼앗음.

기타 정책

아동 양육권

{정책 #3610, 아동 양육권 중 발취}

이사위원회는 학교에 학생을 등록한 사람이 해당 학생의 동거 학부모라고 간주합니다. 법원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동거 학부모는 해당 학생을 매일 돌보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 가디언 또는 실질적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된 정보를 받고, 동거 학부모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이중 권리를 지닙니다.

위원회는 달리 정보를 받지 않은 한, 학생의 학부모 역할을 하고/거나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활동에 관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비동거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간주합니다. 법원에서 부과한 제한 사항이 없는 한, 비동거 학부모에겐 요청에 따라 학년 보고서, 학교 활동 고지, 징계 조치 보고서 또는 교사/교장 컨퍼런스 또는 요약 고지가 제공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또는 기타 어떠한 학부모의 권리와 관련해서든 제한이 가해진다면, 동거 학부모는 이러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원 명령의 정본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비동거 부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 이슈는 해결을 위해 사법 또는 법 집행 당국으로 회부됩니다.

비차별

{정책 #3210, 비차별 중 발취}

학군은 인종, 신조, 피부색, 국적, 명예 제대 재향 군인 또는 군인 신분, 성별, 성적 성향, 성 표현 또는 정체성, 어떠한 감각,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존재 또는 장애인에 의한 훈련받은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학업 및 활동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 및 대우를 제공합니다. 학군은 Boy Scouts of America(미국 보이스카우트) 및 United States Code(미연방법전) 타이틀 36에 애국 단체로 나열된 기타 모든 지정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학교 시설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학군 프로그램에는 성희롱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적인 괴롭힘이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책 및 절차 #3600, 학교생활기록부 중 발취}

학군은 학생들의 교육적 지침 및/또는 복지에는 물론, 질서있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법률의 요구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면, 학군 및 학군 직원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민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군의 재산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질서를 갖춰 적시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또는 성인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중 부정확하거나, 호도하거나 또는 학생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요청에 따라 타 학교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학군에 권한을 부여해 향후 고용주가 해당 학생의 성적 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군에서 학교 기관 또는 단체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하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성인 학생이 학부모로부터 절반 미만의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학부모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동의는 그 학생에게만 권리가 부여되고 그 학생에게서만 동의가 요구됩니다. 학생이 학교의 물품 또는 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입힌 피해의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만 성적표,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배포가 이뤄집니다. 해당 학생의 학업 성적, 특별 배치 및 징계 조치를 포함한 기록부만 등록하는 학교로 전송됩니다. 이들 기록부의 내용은 2 수업일 이내에 등록하는 학군에 통보되고, 기록부 사본은 가능한 신속하게 보내집니다. 공식 성적증명서는 미수 요금 또는 벌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배포되지 않습니다. 지불되지 않은 요금 또는 벌금으로 인해 공식 성적증명서가 보류 중인 사실은 등록하는 학교에 통보됩니다.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FERPA,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선 학부모 및 18세 이상의 학생("적격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기록부 관련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군이 접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학생의 교육기록부를 점검 및 검토할 권리.
- 2)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생각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권리.
- 3) FERPA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개를 인가한 범위를 제외한,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권리.
- 4) 학군이 FERPA의 요건을 미준수했다는 의심과 관련해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 교육부)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

성희롱

{정책 #3209, 성희롱 중 발체}

본 학군은 성희롱을 포함하여 차별이 없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 직원 및 학군 활동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괴롭히는 사람의 성적 요구에의 복종이 교육 또는 일에 대한 기회 또는 기타 혜택의 확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인 경우.
2. 성적 요구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업, 일 또는 기타 학교 관련 결정에 대한 인자인 경우.
3. 달갑지 않은 성적 또는 성 지향적 행실 또는 소동이 개인의 성과를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모욕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경우.

성희롱은 성인이 학생에게, 학생이 성인에게, 학생이 학생에게, 성인이 성인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학군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희롱 혐의에 대한 보고, 민원 및 고충을 학군의 권한 내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즉각적이고 공평한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는 법 집행 기관으로 보고되고, 의심되는 아동 학대는 법 집행 기관 또는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아동 보호 기관)로 보고됩니다.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겐 합당한 학군 서비스가 제공되고 성희롱의 악영향에 대해 해당 상황에 따라 재확인 및 치료가 이뤄집니다.

성희롱에 관여하면 가해 학생에 대해 해당 징계 또는 기타 적합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성희롱에 관여하는 기타 누구든 상황에 따라 학교 부지 및 활동으로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성희롱 민원을 제기한 사람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한 보복은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징계가 부과됩니다. 학군은 보복으로부터 관련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의성 거짓 성희롱 제보는 본 정책 위반입니다. 거짓 혐의를 고의로 보고하거나 이를 뒷받침한 사람에게는 해당 징계가 부과됩니다.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금지

{정책 #3308,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및 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금지 중 발체}

Shoreline 학군은 모든 학생,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가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걱정없이 근무하고, 학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시민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의 의미는 RCW 9A.36.080(3)(인종, 피부색, 언어를 포함한 국적, 성별, 성 발현 또는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적 취향, 신념, 종교, 나이, 참전 용사 또는 병역 여부, 장애 또는 장애인의 훈련된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의 어떠한 특성 또는 기타 특유의 특성에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보이는 의도성 메시지(음란 채팅 등의 전자 전송 포함)나 이미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다음과 같을 때를 말합니다.

-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생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 학생의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영향을 미치거나,
- 너무 심하고 집요하고 또는 만연해서 공포스럽거나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거나,
- 학교를 질서있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와해적인 영향을 미침.

본 섹션의 예시가 실제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특유의 특성”에 대한 예시: 신체적 외모, 복장 또는 기타 의류, 사회 경제적 지위, 성 정체성 및 결혼 등.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비방, 루머, 농담, 풍자, 비열한 발언, 그림, 만화, 장난, 몸짓, 신체적 공격, 위협 또는 기타 서면, 구두, 물리적 행동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도성 행위”라 함은 행위의 궁극적 영향보다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의 선택을 말합니다.

행실의 빈도 및 심각성에 따라 치료, 상담, 시정, 징계 및/또는 법 집행 기관 회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도 피해자, 증인 또는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행동에 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지닌 사람을 상대로 한 양갈음, 보복 또는 무고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보복은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징계가 부과됩니다.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을 보고하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본 정책에 위배됩니다. 고의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 혐의를 허위로 제보를 하는 것 또한 본 정책 위반입니다. 학생 또는 직원은 선의로 보고하는 경우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혐의를 고의로 보고하거나 이를 뒷받침한 사람에게는 해당 징계가 부과됩니다. 어떤 학생이 구두로나 신체적으로 괴롭힘, 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음을 목격했거나 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든 이러한 사건을 학교 공직원에게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떠한 보고든 보고된 사건의 어떠한 구제 불가 부분에서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청구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horeline 학군의 괴롭힘, 협박 및 따돌림 보고 서식을 얻으려면 <http://www.shorelineschools.org/HIBReportingForm>을 방문해 주십시오

준법 담당자: Darlene Mendoza Gonzales, Harassment, Intimidation and Compliance, 18560 1st Ave. NE, Shoreline, WA 98155, 206.393.4213

비차별 및 고충/민원 절차의 고지

Shoreline 공립학교는 인종, 신조,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성적 성향, 성 표현 또는 정체성, 종교, 나이, 재향 군인 또는 군인 신분, 장애인에 의한 훈련받은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과 관계없이 **Equal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y**(동등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보이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학군은 모든 학군 프로그램, 과정, 과외 활동 등의 활동, 서비스, 시설 접근성 등에서 주 및 연방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Shoreline School District(학군)는 학군의 자유 입학 정책 하에 다양한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CTE, 경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영역의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Shoreline 학군은 별도의 비차별적 신청 절차를 통해 선별적 기준에 따른 입학(필수과목을 요구하는 Advanced Placement CTE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및 특별 과정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horecrest High School(206.393.4286번) 또는 Shorewood High School(206.393.4372번)의 입학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CTE 프로그램의 입학 및 참여 요건 중 능숙한 영어 활용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본 공지사항은 206.393.4365 번으로 문의하면 다양한 국적의 커뮤니티에 적합한 언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차별 정책 관련 문의의 처리를 위해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의 정보입니다.

Title IX Officer(타이틀 IX 담당자) 및 주법(RCW 28A.640/28A.642)의 Compliance Coordinator(준법 코디네이터)로서 준법의 모니터링 및 실행을 전반적으로 담당합니다.

타이틀 IX 담당자 겸 성인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Darlene Mendoza Gonzales, HR 이사/기밀 담당
18560 1st Avenue NE, Shoreline, WA 98155
206.393.4776

학생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Don Dalziel,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준법
18560 1st Avenue NE, Shoreline, WA 98155
206.393.4213

ADA 준법 담당자 겸 섹션 504 준법 담당자

Amy Vujovich
학생 서비스 이사
18560 1st Avenue NE, Shoreline, WA 98155
206.393.4117

학군의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 등에서든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상기 주소로 차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 및 무단결석

{정책 및 절차 #3122, 유고결석 및 무단결석 중 발췌}

주: 특정 건물 기반 출석 정책에 관해선 각 학교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모범적인 학생은 매일 할당된 모든 수업에 참석합니다. 교직원은 결석 및 지각 기록부는 물론, 통화 기록 및/또는 학생의 유고결석을 문서화하기 위한 학부모/가디언, 또는 특정 사례에서 학생에 의해 제출된 사유서의 기록부를 유지합니다.

유고결석

학군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숙달에는 정기적인 학교 출석이 필수입니다. 때때로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수업에 결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학군 내 출석 절차의 마련 및 관리가 집행됩니다.

- A. 다음은 결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 1. 학군 또는 학교에서 승인한 활동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 2. 병, 건강 상태 또는 의료 예약(의료, 상담, 치과 또는 검안 등).
 - 3. 가족 응급상황(가족의 사망 또는 병 등).
 - 4. 종교 또는 문화적 목적(종교 또는 문화적 휴일의 준수 또는 종교 또는 문화적 교육 참여 등).
 - 5. 법원, 소송 또는 배심원 활동.
 - 6. 고등교육, 기술학교 또는 견습 프로그램 방문 또는 장학금 인터뷰.
 - 7. RCW 28A.225.055에 따른 주 인증 수색 및 구조 활동.
 - 8. 학생의 주거지 상실 상태와 직접 관련된 결석.
 - 9. 징계조치/시정조치에 따른 결석(예: 단기 또는 장기 정학, 긴급 퇴교).
 - 10. 교장(또는 피지명인)과 학부모, 가디언 또는 자립 청소년 간 상호 합의된 승인 활동.

학교장(또는 피지명인)은 결석이 위 유고결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장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가디언은 추가 심의를 위해 교육감/피지명인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고결석(계속)

- B. 결석이 양해를 받으면, 학생은 해당 교사가 설정한 합리적인 조건 및 시한에 따라 교실 밖에서 모든 놓친 과제를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참여 유형 수업의 경우 수업 시간 중에 이뤄진 활동을 학생이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유고결석은 학부모/가디언 또는 성인(자립 또는 해당 연령의)

학생, 결석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당국에 의해 확인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든 학생이 신체적으로 학군 내에 존재해야 하는 수업이든 출석이 전자적으로 이뤄진다면, 결석은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설정되었다가 학부모 또는 기타 책임있는 성인에 의해 확인된 뒤에야 유고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학생이 가족 계획 또는 낙태와 관련된 건강 진료로 결석을 해야 한다면, 학생은 이를 기밀 정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학생에겐 약물, 알코올 또는 정신건강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학생에겐 HIV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기밀성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결석

- A. 평균 수업일 중 대다수 시간 또는 시기 동안 학교로부터의 어떠한 부재든 위 유고결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결석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 B. 책임 및 개인 책임의 가치를 깨우쳐 주기 위한 수단으로 무단결석한 학생은 그/그녀의 결석에 대한 효과를 겪게 됩니다. 학생의 성적은 만약 등급이 매겨지는 활동 또는 과제가 학생이 결석한 시기 동안 발생한다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C. 학교에선 학생이 현재 학년도 중 어떠한 달 내에서든 1회의 무단결석 후 언제든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학생의 학부모 또는 가디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알리게 됩니다. 통지에는 추가 무단결석의 잠재적인 영향이 포함됩니다.
- D. 현재 학년도 중 어떠한 달 내에서든 2회의 무단 결석 후엔 학부모 또는 가디언과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컨퍼런스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 학부모가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학군이 학생의 결석을 줄이기 위해 취하기로 결정한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무단결석(계속)

- E. 학생의 무단결석이 한 달 내 5회를 넘기기 전까지, 학군은 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 출석 요건을 정하는 협약을 맺거나, 학생을 커뮤니티 무단결석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RCW 28A.225.010 위반 혐의로 소년 법원에 청원서 및 진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F. 만약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학군은 현재 학년도 중 어떤 달 내에 7회의 무단결석을 넘기기 전 또는 현재 학년도 중 10회의 무단결석을 넘기기 전, 학부모,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생에 의한 RCW 28A.225.010 위반 혐의로 소년 법원에 청원서 및

진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G. 모든 정학 및/또는 퇴교는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됩니다.

교육감은 학군의 출석 정책 및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정책 및 절차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숙지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절차를 제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Advancing Student Success By Reducing Chronic Absence

주법에 의해 요구되는 학교 출석

- 주법에 따라 8세~17세의 아동은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 학교에 등록된 6세 또는 7세의 아동 또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학교 출석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논의하고 싶다면 학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귀 자녀가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무단결석의 전체 규정은 구글에서 “RCW 28A.225” 을 입력하고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결석에 대한 학교의 의무

- 만약 귀 자녀가 한 달에 2회의 무단결석을 한 경우 주법(RCW 28A.225.020)에 따라 우리는 귀하 및 귀 자녀와 컨퍼런스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초등학교에서 어떤 달에서든 5회의 무단결석 또는 학년도에서 10 회 이상의 무단결석 후 학군은 컨퍼런스 일정을 잡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귀 자녀가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서면으로 결석을 사전 조율했다면 컨퍼런스는 필요치 않으며, 귀 자녀가 학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계획이 마련됩니다.
- 만약 귀 자녀에게 학년도 중 어떤 달 내에 7회의 무단결석이 있거나

학년도 내 10회의 무단결석이 있다면, 학군은 의무적 출석 법률인 RCW 28A.225.010 위반 혐의로 소년 법원에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 및 귀 자녀는 소년 법원에 출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귀 자녀가 매일 제시간에 학교에 출석하여 종일 수업에 임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 양해를 구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유아원부터 한 달에 평균 2일 결석한다면, 3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 및 읽기에서 학업 표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 6학년 때 결석이 있게 되면, 고등학교 때 중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3대 징후 중 하나입니다.
- 결석은 학생이 학교에 흥미를 잃어 가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따돌림을 겪거나, 기타 잠재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 9학년 때의 개근은 8학년의 시험 성적보다 더 나은 고등학교 졸업률 예측변수입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

- 귀 자녀가 고열, 구토, 설사 또는 전염성 발진 등 많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결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학기 중에는 약속이나 여행을 피하십시오.
- 귀 자녀의 출석을 예의 주십시오. 양해를 구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9일 이상 결석하면, 귀 자녀가 뒤쳐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숙제 및 가방 준비는 전날 저녁에 완료합니다.
-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귀 자녀가 등교할 수 있도록 가족, 이웃 또는 타 학부모와 비상 계획을 마련해 둡니다.

*학교 출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www.attendancework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론 귀 자녀의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귀하를 도와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학교 사무실로 연락해 귀 자녀의 출석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예약하십시오.

윤리 및 정직

{정책 #3302, 윤리 및 정직 중 발취}

정책 3302, 윤리 및 정직을 위반한 학생은 (1) 정책 3300(“학생 행실 모범규준 및 합리적 제재”), 정책 3310(“학생 비행의 징계 및 시정 조치”) 및 수반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 및 처벌과 함께, (2) 학생의 과제 수행 및 성과에 대해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정 사례별로 나타나는 결과는 범죄의 심각성 및 해당 학생의 이전 기록에 따라 다양하며 징계 또는 단기 정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어떤 학생이든 그 학생의 연령 및 행동에 해당되는 차등적 징계를 받게 됩니다.

중고등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학생은 교장/피지명인에게 회부되고 학생의 과제 성과(또는 기타 학업 활동)는 0점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는 담당자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2차 위반: 학생은 10 수업일 이내의 해당 수업으로부터 단기 정학이 부과됩니다. (주: 이 경우 1차 위반과 동일 수업 또는 다른 수업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당한 절차 통지와 함께 수립된 정학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3차 위반: 학생은 10 수업일 이내의 모든 수업으로부터 단기 정학이 부과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정당한 절차 권리가 제공됩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연령에 맞게 자신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매년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정책 3302 위반의 결과로 부과되는 시정 조치의 본질 및 범위에 대해 사전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독창적인 결과물, 자원의 문서화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보조 가이드라인까지 차등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관련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1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윤리 및 정직 정책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경우, 근거를 가지고 의심하는 경우 교사는 다른 조건에서 학생에게 재시험을 보게 하거나 추가적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 및 학군 정책의 위반을 조사하는 담당자의 합리적인 요청(학업 불성실 관련 증거 제출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정책 #2314P, 네트워크화 정보 리소스 및 통신의 학생 접근 및 이용 중 발
취}

허용되는 네트워크 사용

네트워크는 교육적 또는 전문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네트워크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 및 행정 목적으로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여 파일, 프로젝트, 비
디오, 웹 페이지 및 팟캐스트의 생성.
- 블로그, 위키,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및 그룹에 참여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팟캐스트, 이메일 및 웹 페이지의 콘텐츠를 생성.
- 학부모의 허락과 함께, 독창적 교육 자료, 커리큘럼 관련 자료 및 학업을
온라인에 게시. 교실 또는 학교 외 출처는 알맞게 인용되어야 합니다.
- 직원은 인터넷 사용이 부수적이고, 일과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지며,
모든 학군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개인적인 용도로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사용

허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사용 또는 접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개인적 이익, 상업적 요청 및 모든 종류의 보상.
- 학군이 치르는 책임 또는 비용.
- IT 부서 담당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게임,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또
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셰어웨어 또는 프리웨어 포함)의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
- 법안, 후보자 및 기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 해킹, 크래킹, 반달라이징,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시한 폭탄 심기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모니터링 툴의 변경.
- 타 학군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 사이버 집단 따돌림, 혐오 편지, 중상, 모든 종류의 괴롭힘, 차별적 농담
및 언급.
-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온라인 게시, 전송 또는 저장 정보(예: 폭
탄 제작, 약물 제조).
- 외설, 포르노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접속, 업로드, 다운로드, 저
장 및 배포.
- 학군 네트워크에 미승인 장비 설치. 이러한 장비는 무엇이든 몰수 및 폐
기됩니다.

본 적정 사용 정책은 학군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개별적
제어, 공유, 자립형 또는 네트워크화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정보 리소스가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접속 특권의 폐지, 학군 컴퓨터 접속의 중
단, 기타 학교 징계 조치 및/또는 해당 소송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징계 조치는 사례별로 결정됩니다.

버스에서의 학생 행실

{정책 #8123P, 버스에서의 학생 행실 중 발췌}

학생에 의한 어떠한 비행이든 버스 기사 또는 버스 감독자의 관점에서 버스의 안전 운행에 해로우며, 교장이 교통 특권을 중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버스에 탑승한 학생의 행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은 기사 및 학군이 버스에 지정한 어떠한 보조원이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사는 버스 및 승객을 전적으로 관장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학군에 의해 버스에 보조원이 할당되면, 그/그녀는 자신이 담당하도록 할당된 승객의 행실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 또는 팀을 운송할 때 교사 또는 코치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행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생은 버스 기사, 교사, 코치 또는 다른 직원 모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버스 기사에게 최종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다.
2. 모든 학생은 자신에게 지정된 버스에만 탑승해야 합니다. 단, 학교 공무원이 달리 하도록 적힌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엔 예외입니다.
3. 모든 학생은 버스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학교 공무원이 달리 하도록 적힌 서면으로 허락을 받은 경우엔 예외입니다.
4. 좌석 배정을 받은 학생은 버스 기사가 좌석을 바꿔도 좋다고 허용치 않는 한, 해당 좌석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학생은 버스에 탑승 중 교실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사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은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학생은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언어 또는 몸짓을 사용치 않도록 합니다.
6. 학생은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성냥 또는 기타 점화 도구를 사용치 않도록 합니다.
7. 학생은 동반한 교사, 코치 또는 기타 직원이 특정적으로 인가하여 감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버스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8. 학생은 기사의 허락 없이 버스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9. 학생은 언제든지 버스 창문 밖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밀지 않도록 합니다.
10. 학생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휴대 또는 소지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예시: 막대기, 유리 또는 기타 파손 가능한 용기, 무기 또는 총기, 옷에서 튀어나온 끈 또는 핀, 쥐거나 다리 사이에 둘 수 없는 부피가 큰 물건 등. 책 또는 개인 소지품을 통로에 두면 안 됩니다.
11. 학생은 안내견을 제외하고 버스에 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없습니다.
12. 학생은 기사의 좌석 또는 좌우 바로 곁에 앉으면 안 됩니다.
13. 학생은 필수 상황이 아닌 한, 기사와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학생은 버스에 탑승하면 좌석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며 버스 기사가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항상 착석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15. 학생은 버스에 질서있게 탑승/하차해야 하며 기사 또는 근무 중인 학교 안전요원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밀거나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일단 버스에서 내리면, 학생은 보행자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6. 학생은 보행자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을 사용하지 않는 한, 버스 뒤로 길을 건너선 안 됩니다.
 17. 학생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거나 정류장을 떠날 때 길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18. 보도가 없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떠나는 학생의 경우, 다가오는 차량을 마주보는 도로 왼편으로 걸어야 합니다. 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후 자신의 집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19. 학생은 버스에서 좌석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사용이 가능한 경우).
 20. 학생은 버스 기사의 지시대로 비상탈출 훈련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1. 학생은 비상문 또는 비상기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22. 버스에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식별된 학생의 학부모에겐 발생한 피해액이 청구됩니다. 손상을 유발한 학생은 교통수단에서 격리되며 학교로부터 정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3. 학생의 비행은 교통수단 특권 정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 정류장을 오갈 때, 학생은 공공장소에서 성인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법적 관습에 맞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학생은 사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을 남용 또는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외설적인 언어 또는 몸짓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습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공식적인 민원으로 이어지며 교장에게 회부되어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시정 조치(필요 시)는 다음과 같이 학군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실시됩니다.
1. **경고:** 학생의 비행이 본질적으로 사소하여 타 학생의 안전이나 안녕 또는 버스 운영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
 2. **정학:** 학생의 비행이 버스 승객의 안전 및/또는 버스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복된 경고 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학생이 버스를 훼손한 경우.
 3. **퇴교:** 학생의 비행이 본질적으로 버스 운영 및/또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의로 또는 중대하게 위협하는 경우(예: 학생의 기사 폭행).
학부모/가디언 또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여 정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박, 격리 및 기타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

{정책 # 3317, 결박과 격리의 사용 중 발췌}

학군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모든 학생의 대우엔 위엄과 존중이 함께해야 합니다. 학군의 모든 학생(재활법(1973년) 섹션 504에 따라 마련된 개인화된 교육 프로그램(IEP)이나 플랜에 속한 학생 포함)은 부당하게 결박, 결박 장치, 격리 및 기타 물리력의 사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수단은 징계 또는 처벌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박 및 격리는 RCW 70.96B.010 및 Chapter 392-172A WAC에서 정의되고, 본 정책에 수반된 절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곧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학생에게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해에는 자신, 타인 또는 학군 재산에 대한 물리적 해가 포함됩니다. 교직원은 학생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최소한의 결박 및 격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박 및 격리는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이 소멸되면 중단됩니다.

학생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신체적 고통(엉덩이 때리기 또는 학생 구타 등)을 의도적으로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체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위에 기술된 것처럼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
2.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체육 대회 또는 여가 활동의 결과로나, 그 연습을 통해 또는 참여에서 유발된, 신체적 고통 또는 불편함.
3. 교사가 지도하는 수업 활동에서 모든 학생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체적 활동(체육 활동, 현장 학습 또는 직업 교육 프로젝트 등).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물리력의 사용 또는 격리 및 결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결박, 격리 및 기타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

{절차 3317P}

I. 결박, 격리 및 기타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

본 절차는 곧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학생에 의한 것이든 그 임의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학군 교직원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절차는 RCW 28A.600.485, RCW 9A.16.020, RCW 9A.16.100, RCW 28A.155.210, WAC 392-400-235의 요건에 부합되게, 그리고 IEP 학생들의 경우 Chapter 392-172A WAC의 규정에 부합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의:

-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자제력을 잃은 학생이나, 비준법적 또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한 긍정적 행동 치료와 타 학군 승인 전략의 사용. 이러한 전략들은 위협하거나, 와해적인 행동 또는 달리 학생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결합니다.
- **곧, 임박한(Imminent):** 멀리 떨어진 후의 일이 아닌 언제든지 또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또는 조건.
- **격리(Isolation):** 학생이 떠날 수 없는 방 또는 기타 폐쇄된 장소로 학생을 혼자 있도록 제한함. 여기엔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기 위한 학생의 자발적인 공간 사용 또는 긍정적 행동 치료 플랜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임시로 그/그녀의 정규 교육 구역에서 퇴거해 잠겨지지 않은 공간에 두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Likelihood of serious harm):** 어떤 학생에 의해 다음 대상이 또는 다음 상황에서 물리적 피해를 입게 될 중대한 위협.
 - 그/그녀 자신에게, 자살 또는 스스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려는 위협 또는 시도로 입증.
 - 타인에게, 그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입증 또는 타인(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입증.
 - 타인의 재산에 대해,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 또는 피해를 유발한 행동으로 입증.
 - 학생이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했거나 하나 이상의 폭력 행위 이력을 가진 후.
- **긍정적 행동 치료(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이상적 행동을 강화하고, 도전적 행동의 빈도 및 심

각성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 및 지도. 긍정적 행동 치료에는 도전적 행동을 일으키는 환경 인자에 대한 고려 및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치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 **결박(Restraint):**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개입 또는 힘 (결박 장치의 사용 등). 여기엔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경우(적절한 자세를 유지, 균형 또는 교정, 학생의 안전한 활동 참여 허용 등)의 처방된 의료 기기, 정형외과 장치 또는 치료 장치의 적합한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대응규약

부모 및 학군은 상기 정의된 것처럼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 이 있는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될 비상규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응규약(마련되어 있는 경우)은 1) 학생의 IEP로 통합되어야 하고, 2) 표적 행동의 변경, 대체, 수정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치료 플랜의 대응으로 사용되어선 안 되며, 3) 다음과 같은 조건과 한계가 적용됩니다.

a) 학생의 학부모 또는 가디언은 채용될 비상대응규약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협약서를 제공합니다.

b) 비상대응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됩니다.

(i) 격리, 결박 또는 결박 장치(사용될 경우)가 사용될 비상사태의 조건.

(ii) 사용될 수 있는 격리, 결박 및/또는 결박 장치(사용될 경우)의 유형.

(iii) 학생에 대해 격리, 결박 및/또는 결박 장치의 사용이 허용되는 교직원 또는 계약직원 및 교직원 또는 계약직원이 격리, 결박 및/또는 결박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iv) 기타 특별 주의사항.

c) 어떠한 격리, 결박 및/또는 결박 장치의 사용도 중대한 해가 될 가능성이 소멸되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d) 격리, 결박 또는 결박 장치를 사용하는 어떠한 교직원 또는 기타 성인도 격리, 결박 또는 결박 장치에 대한 훈련을 이수 및 인증받아야 합니다.

사건 후 통지 및 부모/가디언과의 검토:

학생에 대한 결박 또는 격리 사용 후 24시간 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부모 또는 가디언에게 구두로 사건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또한 학생에 대해 결박 또는 격리 사용 후 상식적으로 최대한 빠르면서도 5 업무일 내로 우편소인이 찍힌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또는 학군이 통상적으로 영어 외의 언어 또는 소통 방식으로 학교 관련 정보를 학부모 또는 가디언에게 제공한다면, 서면 보고서는 해당 언어 또는 소통 방식으로 학부모 또는 가디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할 일:

-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촉발시킨 행동 및 대응의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또는 가디언과 함께(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을 검토합니다.
- 적절한 절차에 따랐는지 및 해당 학생이 유사한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직원 교육 또는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결박 또는 격리를 부과한 교직원과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건 보고:

본 절차에서 정의된대로, 학교 후원 강의 또는 활동 도중 어떠한 학생에게 든 결박 또는 격리를 사용하는 어떠한 교직원, 학교 인사 담당자 또는 학교 보안 담당자이든 최대한 빨리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알리고, 2 업무일 내에 서면 사건 보고서를 해당 학군 사무소로 제출하게 됩니다. 서면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건의 일시
- 결박 또는 격리를 집행한 교직원의 성명 및 직함
- 결박 또는 격리의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한 설명
- 사용된 결박 또는 격리의 유형 및 기간
- 학생 또는 교직원이 결박 또는 격리와 관련된 사건 도중 신체적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
-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제공된 의료
- 유사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본질 또는 양을 변경하기 위한 모든 제안.

학부모/가디언에게 결박, 격리 및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 정책의 제공:

학군은 모든 학부모/가디언이 결박, 격리 및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에 대한 학군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학생이 IEP 또는 504 플랜을 갖고 있다면, 학군은 최초 또는 연간 IEP 또는 504 플랜이 마련될 때마다 학부모/가디언에게 정책의 사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직원 교육 요건:

모든 교육에는 학생 행동의 긍정적 관리, 문화적 감수성, 와해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의 감소 및 점감을 위한 효과적 소통 및 물리력, 격리 및 결박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도가 포함됩니다. 관리자는 매년마다 합리적 물리력의 사용에 관한 학군의 정립된 정책과 절차를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직원은 디에스컬레이션 전략 및 적절한 물리적 개입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교직원 및 물리력의 개입을 제공할 것으로 상식상 예상되는 사람들은 물리력 개입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참조된 정책 및 절차

- #2314 - 네트워크화 정보 리소스 및 통신의 학생 접근 및 이용
- #3209 - 학생: 성희롱
- #3210 - 비차별
- #3122 - 유고결석 및 무단결석
- #3300 - 학생 행실 및 비행에 대한 시정 조치
- #3302 - 윤리 및 정직
- #3308 -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사이버 집단 따돌림의 금지
- #3310 - 학생 비행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
- #3600 - 학교생활기록부
- #3610 - 아동 양육권
- #8123 - 버스에서의 학생 행실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정책 #2151, 학교 대항 운동 경기 {학생 운동선수 계약}

고지

총기 금지 구역

모든 학교는 RCW 9.41.28에 따라 “총기 금지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 내 또는 학교 건물에서 RCW 9.41.250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총기 및 기타 어떠한 위험 무기도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은 퇴교의 근거가 되며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하면 이의 제기가 가능한 1년의 의무적 퇴교를 받게 되고, 학부모 및 법 집행 기관으로 통지됩니다. {RCW 28A.600.420}

수색권 사용

법에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바에 따라 훈련된 개는 학생,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또는 학군 부지(사물함 등) 내에서 약물 또는 기타 밀수품을 발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연령 학생을 위한 Childfind

Shoreline 공립학교의 가족을 위해

귀 자녀의 언어, 시력, 청각, 운동 기능, 인지 능력 또는 사회 및 정서 등의 발달이 걱정되십니까?

Childfind 선별 검사는 Edwin Pratt Early Learning Center(주소: 1900 N 170th St., Shoreline)에서 한 달에 1회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Childfind 선별 검사는 학교 전문가(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및 심리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206.393.435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알 권리

귀하에게 귀 자녀 교실 교사(들)의 전문 자격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이 정보를 요청하면, 학군 또는 학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A: 교사가 수업을 제공 중인 학년 및 과목에 대한 주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B: 주 면허 요건이 포기된 긴급 상황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 중인지 여부

C: 교사의 대학 전공 학위 유형 및 석사 학위 또는 수수료증의 경우 학과목 분야

D: 귀 자녀가 준전문 직원으로부터 Title I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와, 그러한 경우 그/그녀의 자격.

이러한 정보를 원한다면 귀 자녀의 학교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FERPA 권리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학부모 및 18세 이상의 학생(“적격 학생”)에게 학생의 교육기록부 관련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가 접속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학생의 교육기록부를 점검 및 검토할 권리.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점검하고자 하는 기록부를 명시한 서면 요청을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공직원은 접속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에게 기록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2.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생각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권리.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록부를 수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장에게 서면을 보내 기록부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리고 그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요청한대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교는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하고 그들에게 수정 요청 관련 심리에 대한 권리를 알려줍니다. 심리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심리에 대한 권리를 통지할 때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3. FERPA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개를 인가한 범위를 제외한,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권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개를 허용하는 하나의 예외는 적법한 교육적 이해관계에 있는 학교 공직원에게로의 공개입니다. 학교 공직원(School Official)이란 관리자, 감독관, 강사, 또는 보조교사(보건 또는 의료 교사 및 경찰관 포함)와 같이 학교에서 고용한 사람; 학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학교가 특수 업무(변호사, 감사, 의료 컨설턴트 또는 치료사 등)를 위해 계약한 사람 또는 회사; 또는 징계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학교 공직원을 도와주는 학부모 또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 공직원은 적법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갖고 교육 기록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경우 검토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학교는 요청에 따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타 학군의 공직원에게 해당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육기록부를 공개합니다.
4. 학교가 FERPA의 요건을 미준수했다는 의심과 관련해 U.S. Department of Education(미 교육부)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 FERPA를 집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01

만약 귀 학생에 대한 디렉터리 정보를 학군에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귀 자녀의 학교 또는 학군 사무소에서 옵트아웃(미동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소: 18560 1st Ave. NE, Shoreline, WA 98155.

FERPA Opt-Out(미동의) 고지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나 Shoreline 공립학교가 귀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 귀하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horeline 공립학교는 귀하가 귀자녀의 학교에 FERPA 옵트아웃(미동의) 서식을 요청하여 접수하지 않는 한, 서면 동의 없이도 적절하게 표기된 “디렉터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각 학교 사무실에서 제공합니다.

디렉터리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사진, 동영상 이미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출석일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활동 및 스포츠 참가, 체육팀원의 체중 및 신장, 졸업장 및 수상 내역, 최근 다녔던 학교가 포함됩니다.

아래는 FERPA 옵트아웃 서식 제출 시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카테고리 목록이며, 이 양식은 각 학교 사무실에서 제공합니다.

학교 간행물, 이미지 및 뉴스 매체를 위한 디렉터리 정보

Shoreline 공립학교는 우리의 학생들, 교직원 및 많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끔씩 학생들은 학교 연감, 학교 뉴스레터, 동영상, 웹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위해 또는 지역 뉴스 매체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진 및/또는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귀 자녀의 학교에 FERPA Opt-Out Form(옵트아웃 서식)을 요청해 접수하면 됩니다.

학교 PTA/PTSA 단체를 위한 디렉터리 정보

School Parent Teacher Student Associations(PTSA, 학교 학부모 교사 연합회)는 때때로 멤버십, 모임, 이벤트 및 활동과 관련한 PTSA 디렉터리 및 우편물 발송을 위한 학생 디렉터리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귀 자녀의 학교에 FERPA Opt-Out Form(옵트아웃 서식)을 요청해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및 기구를 위한 디렉터리 정보

칼리지, 직업/기술학교, 장학금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기구들은 가끔씩 자체 프로그램, 기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발송을 위해 디렉터리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귀 자녀의 학교에 FERPA Opt-Out Form(옵트아웃 서식)을 요청해 접수하면 됩니다.

U.S. Military를 위한 디렉터리 정보(고등학교만 해당)

연방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학생의 가정 연락처 정보를 모병담당관에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디언이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귀 자녀의 학교에 FERPA Opt-Out Form(옵트아웃 서식)을 요청해 접수하면 됩니다.

노인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 공급업체를 위한 디렉터리 정보(고등학교만 해당)

고등학교가 노인 활동(사각모, 가운, 반지, 시니어 포토, 시니어 스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있는 공급업체와 디렉터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귀 자녀의 학교에 FERPA Opt-Out Form(옵트아웃 서식)을 요청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목적용 디렉터리 정보

귀하는 또한 귀하의 디렉터리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이미지(연감 등))가 기밀사항으로 보관되고 어떤 목적으로든 게재 또는 공유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자녀의 학교에 FERPA 옵트아웃 서식을 요청 및 접수하면 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서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살충제 사용

본 통지는 학군의 시설 중 특정 구역에 잡초 방제 등을 위해 살충제 살포가 가끔씩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훌륭한 통합해충관리 계획으로 살충제 사용이 상당히 줄었긴 하나, 여전히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잡초 방제를 위해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운동장/시설(펜스 라인, 콘크리트에 있는 균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Shoreline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정립된 학군 절차 조치에 따라 살포됩니다. 워싱턴 주의 인가를 받은 학군 직원 또는 상업적 살포자만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요약 등 살충제 사용 관련 정보는 각 학년말에 Shoreline Center의 학군 유지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재판된 부분은 법률, 특히 워싱턴 주 RCW (17.21.415)의 일부이며, 살충제 사용 통지에 관한 학군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혀있는 “학교” 는 특정 학교가 아닌 이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학군” 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가끔씩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하는 살포를 제외하고 살충제 사용이 필수적일 경우, 그러한 살포는 연중 여름 및 기타 학교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우리 학군의 관행입니다.

RCW 17.21.415에 따라 다음 사항이 학교에 요구됩니다.

1. 최소한 이해 관계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가디언 및 직원에게 학교 시설에 살충제를 살포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알리는 통지 시스템을 마련.
2. 통지 시스템에는 학교 대표 사무실 내 주요 위치에 알림문의 게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부모, 가디언 및 직원에 대한 모든 통지에는 제목 “고지: 살충제 살포” 가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a) 살포할 살충제의 제품명
- (b) 예정 살포 일시
- (c) 살충제 살포 위치
- (d) 처치가 필요한 해충
- (e) 학교의 담당자 이름 및 전화 번호.

4. 학교 시설 살포는 통지에 명시된 예정 일시 이후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통지 절차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5. 학교는 살포 시 살충제를 살포하는 모든 학교 시설에 알림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살포가 RCW17.21.410 (l) (d)의 조항에 공인 살포자가 게시하도록 달리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 학교 직원에 의해 학교 구내에 설치되는 살충제 살포 알림판은 살포 위치 및 학교 구내의 각 주요 진입 지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알림판은 최소 4 x 5 인치 크기가 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이 구역은 귀하의 학교에서 최근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살포한 곳입니다” 와 꼬리말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모두 대문자). 꼬리말에는 학교의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주요 진입 지점은 학교 구내로 연결되는 가장 일반적인 진로 또는 차도로 정의됩니다.

(b) 학교 구내 이외의 학교 시설에 설치된 살포 알림판은 살포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알림판은 최소 8.5 x 11인치 크기가 되고, 제목에 “고지: 살충제 살포” 를 포함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살포한 살충제의 제품명

(ii) 살포 일시

(iii) 살충제 살포 위치

(iv) 처치 해충

(v) 학교의 담당자 이름 및 전화 번호.

(c) 알림판은 배경과 대비를 이루는 색상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d) 알림판은 살포가 완료된 후로부터 최소 24시간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살충제 라벨에서 24시간이 넘는 입장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알림판은 라벨에 명시된 입장 제한 시간과 일관되게 현장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제거된 포스터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학교 시설에 대한 살충제 살포에는 아동에게 허용되지 않는 항균성 살충제 살포나 곤충 또는 설치류 미끼의 설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만약 살포 후 최소 연속 2일 동안 학생이 학교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해당 학교 시설에 대한 살포가 이루어진다면, 본 섹션의 사전 통지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어떠한 해충의 박멸을 위해 긴급한 학교 시설 살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본 섹션의 사전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에 긴급한 살포가 이뤄진 경우, 학교의 통지 시스템에 따른 통지는 살포 후 가능한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통지에는 일반적인 사전 통지 요건과 일치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학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본 챕터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 시설에 대한 모든 살충제 살포 기록부(기록의 연간 요약 등)를 만들어야 합니다.

10. 학교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제거된 알림판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본 섹션을 준수하는 학교는 요건에 따라 설치된 알림판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석면 관리 계획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환경보호국)은 학교 내 석면 규제의 일환으로, 학교가 학부모, 교사 및 직원단체에 자신의 학군에 석면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Shoreline 학군은 1988년에 각 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 각 시설에 대해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통지, 검사, 재검사에 관한 기록을 비롯하여, 석면 작업 또는 석면 완화 작업의 요약이 Shoreline School District Maintenance Department(학군 유지보수 부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주소: 18560 1st Ave. N.E., Shoreline, Washington). Shoreline 학군의 각 석면 관리 계획은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공교육 교육감)에게 접수되어 왔으며, 각 학교 현장 관리 사무실 및 Shoreline 학군 유지보수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규정 요건으로 학교 건물에서 근무하는 모든 단기 근로자를 위해 석면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리는 학군 통지가 있습니다. 각 현장에 있는 사무실 직원은 모든 단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물에 대한 석면 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건물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 시행사 등)을 제공하게 되며, 석면 관리 계획의 겉표지에는 어떤 건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명시하게 되며, Tab V는 각 자재 및 그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Shoreline 학군

신고하세요!

긴급상황 시,
911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SafeSchools Alert란 우리 학군의 팀 보고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전에 위협에 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직접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에게겐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4가지 손쉬운 신고 방법



<http://1261.alert1.us>

1261@alert1.us

206.317.5768

문자로 팀을 알려주실 경우
206.317.5768 번호를 이용하세요.



긴급상황 시, 911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SafeSchools Alert란 우리 학군의 팀 보고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전에 위협에 되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직접 신고해주세요!

SHORELINE
PUBLIC SCHOOLS
SHORELINE SCHOOL DISTRICT #412
18560 1ST AVENUE NE
SHORELINE, WA 98155-2148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1066